

大田直轄市 讓與金 特別會計 設置 條例案
審 査 報 告 書

1991 . 12 .

內務委員會

目 次

1. 審査 經過	2
2. 提案 說明 要旨	2
3. 專門委員 檢討 要旨	3
4. 質疑 및 答辯 要旨	4
5. 討論 要旨	4
6. 審査 結果	4
7. 體系 字句 整理 内容	4
8. 其他 必要한 事項	4

大田直轄市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案
審查報告書

1991年 12月 23日
內務委員會

1. 審查經過

2. 提案說明 要旨(提案說明者：企劃管理室長)

가. 提案理由

本條例는 地方讓與金法 第4條의 規程에 의한 地方讓與金 對象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地方讓與金 特別會計를 設置하고 그 運用에 關한 事項을 制定코자함.

나. 主要骨子

- 歲入 對象 財源 (第2條)

歲入對象은 地方讓與金法 第4條 規程에 의하여 讓與된 地方讓與金과 他會計轉入金 및 移越金과 借入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함.

- 歲出 對象 事業(第3條)

地方讓與金法 第4條 規程에 定해진 對象事業의 經費로 함.

- 不足事業費 地方債發行(第4條)

歲出財源이 不足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金額의 範圍內에서 地方債를 發行하여 使用할 수 있도록 함.

- 剩餘金의 處理(第5條)

決算結果 剩餘金이 發生할 때에는 다음年度 歲入으로 移入해서 處理하도록 함.

3. 專門委員 檢討 要旨 (專門委員 : 安鍾贊)

本 條例案은 地方讓與金法의 改正에 따라 讓與金의 對象事業이 擴大 變更됨으로써 이를 效果的으로 運用하기 為하여

地方財政法 第5條 第2項의 規定에 依據 特定資金을 特定事業에 經理하고자 하는 特別會計 設置條例 制定案으로써

그 主要 内容을 살펴보면

- 첫째 歲入은 讓與金法 第5條 規定에 의하여 讓與되는 財源과 他會計 轉入金 및 移越金과 借入金 等으로 하고(第2條)
- 둘째 歲出은 道路整備事業과 水質汚染防止事業 그리고, 青少年育成事業 等에 使用되며 (第3條)
- 셋째 歲出財源이 不足할 때에는 地方自治法 第115條 및 地方財政法 第8條 規定에 의하여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地方債를 發行할 수 있으며 一時 借入도 할 수 있도록 하고(第4條)
- 넷째 當該年度 事業施行 完了後 發生되는 剩餘金은 다음年度에 歲入에 編成하여 使用할 수 있도록 하는 内容임. (第5條)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없음

5. 討論要旨 : 省略

6. 審查結果 : 原案 可決

7. 體系 字句 整理 内容 : 없음

8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음

大田直轄市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(案)

議案 番號	56
----------	----

提出年月日 : 1991.12.6
提出者 : 大田直轄市長

1. 提案理由

本條例는 地方讓與金法 第4條의 規程에 의한 地方讓與金 對象事業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地方讓與金 特別會計를 設置하고 그 運用에 관한 事項을 制定코자함.

2. 主要 骨子

가. 歲入 對象 財源 (第2條)

歲入對象은 地方讓與金法 第4條 規程에 의하여 讓與된 地方讓與金과 他會計轉入金 및 移越金과 借入金 및 其他收入金으로함.

나. 歲出 對象事業(第3條)

地方讓與金法 第4條 規定에 定해진 對象事業의 經費로 함.

다. 不足事業費 地方債發行(第4條)

歲出財源이 不足할 때에는 内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金額의 範圍內에서 地方債를 發行하여 使用할 수 있도록 함.

라. 剩餘金의 處理 (第5條)

決算結果 剩餘金이 發生할 때에는 다음年度 歲入으로 移入해서 處理하도록함.

3. 參考 事項

關係法令 및 制定 根據

地方讓與金法

第 4 條 (讓與金의 對象事業)

① 地方自治團體는 讓與金을 다음 各號의 事業에 사용하여야 한다.

1. 道路整備事業 : 道路法에 의한 道路中 直轄市長이 管理하는 道路(이하“直轄市道”이라 한다), 地方道, 市長이 管理하는 國道(國道外의 道路中 國道代替迂迴道路와 國道連結幹線道路를 包含한다. 이하같다), 郡道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漁村道路의 開設 · 擴張 · 鋪裝事業
2. 農漁村地域開發事業 :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定住生活圈開發事業과 奧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奧地開發事業
3. 水質污染防治事業 : 水質環境保全法 · 下水道法등 水質污染防治關係法에 의한 水質污染防治事業
4. 青少年 育成 事業 : 青少年育成法等 青少年育成關係法에 의한 青少年의 健全育成을 위한 事業

② 第1項 各號의 事業을 推進하기 위한 細部事業(이하 “單位事業”이라 한다)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 5 條 (讓與金의 對象事業別 配分比率)

① 第4條第1項 各號의 事業을 위하여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讓與金財源(이하“讓與金財源”이라 한다)을 配分하는 比率을 다음과 같다.

1. 道路整備事業 : 讓與金財源의 1,000分의 705에 該當하는 金額
 2. 農漁村地域開發事業 : 讓與金財源의 1,000분의 115에 該當하는 金額
 3. 水質污染防治事業 : 讓與金財源의 1,000분의 170에 該當하는 金額
 4. 青少年 育成 事業 : 讓與金財源의 1,000분의 10에 該當하는 金額
- ② 第1項 各號의 事業을 위하여 配分된 金額의 單位事業別 配分比率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.

第 6 條 (讓與金의 讓與基準)

①第4條第1項 各號의 事業을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에 譲與하는 金額의 譲與基準은 다음과 같다.

1. 道路整備事業 :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配分된 金額(이하“配分된 金額”이라 한다) 을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管理하는 道路의 未開設 · 未擴張 및 未鋪裝比率에 따라 譲與한다. 다만, 市長이 管理하는 國道에 關한 事業에 대하여는 關係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中 · 長期計劃과 譲與金을 譲與하는 年度의 事業計劃을 審查하여 譲與 한다.
2. 農漁村地域開發事業 : 配分된 金額을 郡管轄區域內의 面數의 比率에 따라 譲與한다.
3. 水質污染防止事業 : 配分된 金額을 關係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水質污染防止事業에 關한 中 · 長期計劃과 譲與金을 譲與하는 年度의 事業計劃을 審查하여 譲與한다,
4. 青少年育成事業 : 配分된 金額을 關係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青少年育成事業에 關한 中 · 長期計劃과 譲與金을 譲與하는 年度의 事業計劃을 審查하여 譲與 한다.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譲與하는 金額의 單位事業別 譲與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.

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譲與하는 金額을 算定할 때에는 人口등을 参照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正할 수 있다.

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

대전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(안)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 외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 양여금관리 특별회계(이하“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세입)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.

1.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
2. 타 회계 전입금
3. 이월금,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

제 3 조(세출) 이 회계의 세출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규정에 열거하는 사업수행에 필요 한 경비로 한다.

제 4 조(지방채발행등) ①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,
②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.

제 5 조(잉여금의 처리)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.

제 6 조 (준용)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

제 7 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地方讓與金法

策 1 條(目的)

이 법은 國稅收入의 一部를 地方自治團體에 讓與하여 地方自治團體의 財政基盤을 擴充하고 道路整備事業等을 推進함으로써 地域間의 均衡있는 發展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 2 條(定 義)

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.

1. “地方讓與金”이라 함은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가 地方自治團體에 讓與하는 金額을 말한다,
2. “地方自治團體”라 함은 地方自治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中 直轄市·道·市·郡·自治區(直轄市의 區에 한한다)를 말한다.

第 3 條(讓與金의 財源)

地方讓與金(이하 “讓與金”이라 한다)의 財源은 國稅와 地方稅의 調整等에 관한 法律 第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讓與되는 金額으로 한다)

第 4 條(讓與金의 對象事業)

① 地方自治團體는 請與金을 다음 각號의 事業에 사용하여야 한다.

1. 進路整備事業 : 道路法에 의한 道路中 直轄市長이 管理하는 道路(이하 “直轄市道”이라 한다), 地方道, 市長이 管理하는 國道(國道外의 道路中 國道代替迂迴道路와 國道連結幹線道路를 包含한다. 이하 같다), 郡道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漁村道路의 開設·擴張·鋪裝事業
2. 農漁村地域開發事業 :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定住生活圈開發事業과 奧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奧地開發事業
3. 水質污染防治事業 : 水質環境保全法·下水道法등 水質污染防治關係法에 의한 水質污染防治事業

4. 青少年 育成 事業 : 青少年育成法等 青少年育成關係法에 의한 青少年의 健全育成을 위한 事業
 - ② 第1項 各號의 事業을 推進하기 위한 細部事業(이하“單位事業”이라 한다)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 5 條 (讓與金의 對象事業別 配分比率)

①第4條第1項 各號의 事業을 위하여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讓與金財源(이하“讓與金財源”이라 한다)을 配分하는 比率을 다음과 같다.

1. 道路整備事業 : 諾與金財源의 1,000分의 705에 該當하는 金額
2. 農漁村地域開發事業 : 諾與金財源의 1,000分의 115에 該當하는 金額
3. 水質汚染防止事業 : 諾與金財源의 1,000분의 170에 該當하는 金額
4. 青少年 育成 事業 : 諾與金財源의 1,000분의 10에 該當하는 金額

②第1項 各號의 事業을 위하여 配分된 金額의 單位事業別 配分比率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.

第 6 條 (讓與金의 諾與基準)

①第4條第1項 各號의 事業을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에 諾與하는 金額의 諾與基準은 다음과 같다.

1. 道路整備事業 :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配分된 金額(이하“配分된 金額”이라 한다)을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管理하는 道路의 未開設 · 未擴張 및 未鋪裝比率에 따라 諾與한다. 다만, 市長이 管理하는 國道에 관한 事業에 대하여는 關係 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中 · 長期計劃과 諾與金을 諾與하는 年度의 事業計劃을 審查하여 諾與한다.
2. 農漁村地域開發事業 : 配分된 金額을 郡 管轄區域內의 面數의 比率에 따라 諾與한다.
3. 水質汚染防止事業 : 配分된 金額을 關係 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水質汚染防止事業에 관한 中 · 長期計劃과 諾與金을 諾與하는 年度의 事業計劃을 審查하여 諾與한다.

4. 青少年育成事業 : 配分된 金額을 關係 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青少年育成事業에 關한 中·長期計劃과 讓與金을 讓與하는 年度의 事業計劃을 審查하여 讓與한다.

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讓與하는 金額의 單位事業別 讓與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.

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讓與하는 金額을 算定할 때에는 人口등을 参照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正할 수 있다.

第 7 條(讓與金의 決定)

① 內務部長官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讓與하는 謂與金을 決定하고자 할 때에는 謂與金 算定에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.

② 內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謂與金을 決定한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決定된 内容을 通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謂與金의 算定基礎와 地方自治團體別 内譯을 作成하여 이를 함께 送付하여야 한다.

第 8 條(讓與金 算定資料의 提出)

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讓與하는 謂與金의 算定에 必要한 資料를 內務部長官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.

②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謂與金對象事業計劃等 謂與金 算定에 必要한 資料를 內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.

第 9 條(讓與金의 是正)

內務部長官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謂與金 算定資料에 의하여 謂與金을 謂與한 경 우에 그 算定資料가 사실과 다르게 잘못 作成된 것으로 認定되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잘못 謂與한 謂與金額을 다음 年度 謂與金 謂與時에 當該 地方自治團體에 減額 하여 謂與한다.

第 10 條(行政區域 變更等에 따른 措置)

內務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또는 行政區域의 變更이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當該 地方自治團體에 讓與한 讓與金을 調整하여 讓與한다.

第 11 條(指導 · 監督等)

- ①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讓與金對象事業이 效率的으로 推進될수 있도록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하여 關係法令에 의한 必要한 支援과 指導 · 監督을 행한다.
-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讓與金對象事業이 效率的으로 推進될 수 있도록 그 事業에 所要되는 地方財源을 最大限 確保하여야 한다.

第 12 條(施行令)

- 이 法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,

附 則

이 法은 1991年 1月 1日 부터 旅行한다.

附 則

(施行日) 이 法은 1992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.